국무총리 훈령 제430호(2002. 5. 17.)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 개정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무협조 및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조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조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을 말한다.
2. "위원회"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 3 조 (당정협조업무의 총괄 조정) ①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당정협조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②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당정협조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당정협조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제 4 조 (정당과의 협의사항) 각 부 처 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
2. 대통령령안
3.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 부령 및 정책안

4. 기타 주요현안문제

제 5 조 (법령안당정협의) 각 부 처 청 및 위원회의 장이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관회의 상정 2주전까지 협의를 마쳐야 한다.

제 6 조 (주요 총리령 부령 및 정책안 협의) 각 부 처 청 및 위원회의 장이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 부령 및 정책안을 입안 또는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 조 (정당에 대한 정책자료 제공) 국무총리는 정당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 처 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자료의 제공을 지시할 수 있다.

제 8 조 (담당부서 등의 지정) 각 부 처 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당정협조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결과보고) 각 부 처 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협의결과
2. 제8조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지정내용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